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신영철)

담당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정택수 부장 02-3673-2143)

제목 : [성명]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총 2매)

보도일자 : 2024. 01. 26.(금)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1. 26. (금)

##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 ‘22~ ‘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00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공사·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를 발주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은 공정한 경쟁(가격경쟁 포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행안부를 포함한 모든 공조직이 지켜야 할 의무라 주장하고 있다. 공문에서 행안부는 일부 사업의 유찰이 자자체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영리법인의 입찰담합(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 중에 담합 등에 의한 유찰이 있다면 행안부의 공문은 건설사에 막대한 공사비, 즉 혈세를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1월 23일 행안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배임행위이자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하며, 합당한 자료 공개가 안 될 시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24년 1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별첨 : 행안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 공문

■ 첨부 :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내용

신청정보			
제목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회계제도과-558)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내용	<p>수고맙습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신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 1. 19.자 공문(제목: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 회계제도과-558)으로 일괄입찰 공사 등에서 유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이유로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등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난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첨부 공문 참조).                      경실련은 그간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기시책사업이 공정한 경쟁(가격경쟁 포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것이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공조직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 부께서는 일부 사업의 유찰을 언급하면서 영리법인의 입찰담합(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검토확인없이 만연히 자치단체 등만을 탓하는 듯 합니다.                      이에 아래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 부 공문에서 언급한 일괄입찰 공사 27건 중 유찰되지 않은 공사의 공사명, 발주기관(수요기관), 입찰공고문, 입찰자수, 각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률, 낙찰업체</li> <li>2. 위 1.항 중 유찰되었다는 14건 공사의 공사명, 각 입찰공고문, 입찰공고 횟수(날짜 포함), 입찰자수, 입찰금액 및 유찰사유</li> <li>3. 귀 부 공문에서 언급한 00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건설공사(종별제) 8개 공구 중 유찰되지 않은 공사의 공사명, 발주기관(수요기관), 입찰공고문, 입찰자수, 각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률, 낙찰업체</li> <li>4. 위 1.항 중 유찰되었다는 3개 공구의 공사명, 각 입찰공고문, 입찰공고 횟수(날짜 포함), 입찰자수, 입찰금액 및 유찰사유</li> <li>5. 귀 부께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단정)한 근거 및 검토자료</li> <li>6. 귀 부께서 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첨부 공문과 같이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li> <li>7. 첨부 공문 내용에 따르면, 귀 부는 자치단체 등이 공사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귀 부께서 판단한 자치단체 등의 부당행위(근거규정 포함)</li> </ol>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청구일자	2024.01.23	수수료감면여부	해당없음
참조문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 회계제도과-558.pdf	수수료감면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